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92호
----------	-------

2018. 03. 22.(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03월 15일

다. 상정일자 : 2018년 03월 22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주 의원)

가. 제안사유

○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규정 (안 제1조)

-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

○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등

- 재단의 임원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 재단의 재원 조성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및 수익금 등
- 재단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가능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출연 근거와 방법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재단의 목적사업 소요경비 조달을 위해 의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립목적 :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업내용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으로, 안 제6, 7조에는 기구 구성(이사회, 사무국) 및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 12조에는 재단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과 재단이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제재 사항을 규정함.
 - 재단이 안 제4조에 따라 일부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재단의 투명한 운영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 및 감독이 요구됨.
- 안 제8조에는 재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단의 재원 구성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안 제13조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상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기 시행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제정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적용시점 상 혼란을 조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자·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각 조항들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의 의견 반영 및 해당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이견(異見)은 없음.

참 고**재단법인 충북학사 일반현황**

□ 법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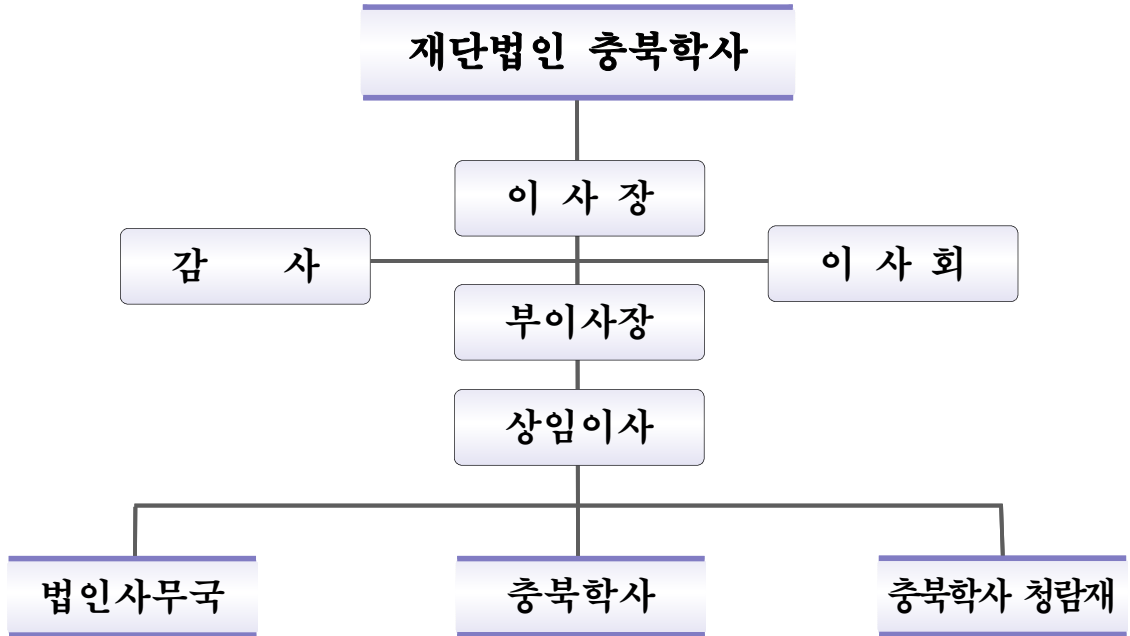
- 법인설립 : 1991. 12. 11(충청북도 교육청)
- 임 원 : 총 12명(이사 10, 감사 2)
- 기본재산(기금) : 37.5억원(은행예치관리)
- 주요사업 : (재)충북학사·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및 관리, 충북미래관 관리

□ 학사시설 현황

구 분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
설립목적	-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육성	
설립일	- 1992. 3.15(신축이전 '09.8.25)	- 1999. 3.1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지북동)
규 모	- 대 지 2,692.00㎡, - 연면적 12,587.40㎡	- 대 지 5,690.00㎡, - 연면적 5,562.67㎡
재사능력	- 356명(남 194, 여 162)	- 264명(남 132, 여 132)
운영인력	- 21명(일반직 10, 무기계약직 11) ※ 충북미래관 수탁관리 인력 포함	- 14명(일반직 7, 무기계약직 7) ※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이 겸임
운영재원	- 입사생부담금, 도비보조금, 기금이자수입 등	- 입사생부담금, 도비보조금 등
2018년 당초예산	2,592,945천원(보조금 1,445,000천원)	1,727,394천원(보조금 1,006,000천원)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5급	6급	7~9급	무 기 계 약 직
계	정원	38	2	3	5	10	18
	현원	35	1	2	3	11	18
법 인	정원	2	-	1	-	1	-
	현원	0	-	-	-	-	-
충북학사	정원	21	1	1	3	5	11
	현원	21	1	1	2	6	11
충북학사 청 람 재	정원	15	1	1	2	4	7
	현원	14	-	1	1	5	7

※ 정원 대비 결원(3)은 겸직운용 : 청람재 원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부.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3월 14일
발의자 :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연철흙

1. 제정이유

-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규정 (안 제1조)
- 나.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등
- 다. 재단의 임원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 라. 재단의 재원 조성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및 수익금
- 마. 재단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 바.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가능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20 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 라.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사항 및 방법

9.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7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검사·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① 도지사는 재단이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 첨부제의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이 조례는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충북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 두 환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